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법 개정

GSFIC 2018.04.30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 2019년 1월 1일 시행

①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을 함유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법 제12조 내지 제27조)

-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

살생물제	정의	예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 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②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법 제7조 내지 10조)

-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 제품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확대했다.
-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③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문구의 표기를 금지하고,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법 제34조)

-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에 대해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기업이 상시 주의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②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법)」 * 2019년 1월 1일 시행

①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법 제10조)

- 현재는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 또한, 환경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②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32조)

-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칭, 용도·함량, 유해성정보, 간단한 노출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신고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함(법 제17조의2)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 알림/홍보 → e-환경뉴스 →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학법 개정 공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